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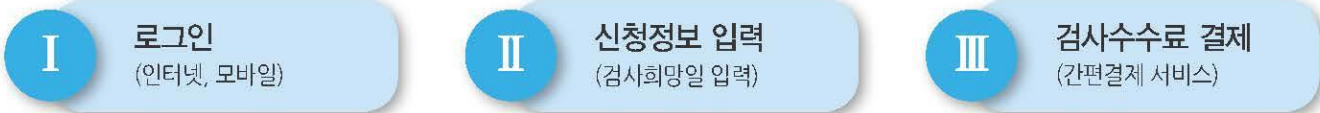


승강기검사신청안내문

승강기 검사주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검사주기 도래일 20일 전까지 승강기민원24 (minwon.koelsa.or.kr)**을 통해 **승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검사신청방법 “승강기민원24” 접속



02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납부 * 검사대상 승강기 및 검사수수료 안내 참조(뒷면) 인터넷으로 검사신청 시 원하는 은행의 가상계좌 추가 개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체크카드 사용 가능(직불카드 불가) 별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으며 카드매출 전표로 대체

03 검사 또는 재검사(불합격) 연기 신청 안내



- ※ 관련 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 연기사유 :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또는 시설물)의 중대결함으로 정상운행불가, 운행중단(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 천재지변 등
- ※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신청은 승강기 검사주기 도래일 만료 전에 관할 시·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공단으로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04 승강기 관련 주요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벌 칙 사 항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련 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
-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불합격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선임 후 3개월 이내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입니다.

05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감 면 대 상 시 설	비 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 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제외 - 분동수수료는 감면대상 제외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검사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6 검사수수료

◎ 완성·수시·정밀안전검사

< 단위 : 원 >

구분	기준층 또는 길이	기준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확인검사 수수료	
		일반	휴일/야간	체증요금			
미베 이터	전기식	승객용/화물용 6층	185,872	252,189	2,621	92,936	19,446
		비상용 10층	233,136	317,467	3,287	116,568	19,688
		장애인용 6층	189,588	257,317	2,673	94,794	19,507
	유압식	승객용/화물용 3층	185,681	251,956	2,618	92,841	19,382
		장애인용 3층	188,735	256,165	2,661	94,368	19,437
	소형	10m	151,343	204,058	2,134	75,671	19,686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8m	166,444	225,370	2,347	83,222	20,150	
덤웨이터	3층	71,401	94,133	1,007	35,700	19,077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4m	81,334	107,855	1,147	40,667	18,714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4m	103,324	138,204	1,457	51,662	18,858	

◎ 정기검사

< 단위 : 원 >

구분	기준층 또는 길이	기준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확인검사 수수료	
		일반	휴일/야간	체증요금			
미베 이터	전기식	승객용/화물용 6층	105,927	141,671	2,860	52,963	19,446
		비상용 10층	120,512	161,787	3,254	60,256	19,688
		장애인용 6층	109,641	146,797	2,960	54,820	19,507
	유압식	승객용/화물용 3층	96,103	128,132	2,595	48,052	19,382
		장애인용 3층	99,154	132,338	2,677	49,577	19,437
	소형	10m	95,248	126,955	2,572	47,624	19,686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8m	94,004	125,235	2,538	47,002	20,150	
덤웨이터	3층	55,486	72,137	1,498	27,743	19,077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4m	57,395	74,768	1,550	28,698	18,714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4m	70,743	93,171	1,910	35,372	18,858	

※ 위 검사수수료는 분동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이용 안내 >

- ☑ 각종 승강기 검사 및 행정민원 관련 정보 문자안내(별도신청 시)
- ☑ 승강기의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One-Stop 기능 제공
: 검사일정 확인/변경, 보완기간연장, 합격증명서/승강기번호판 재발급,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
- ☑ 모든 민원신청 건에 대한 진행현황 및 처리결과 실시간 제공
- ☑ 각종 서식 및 증명서 발급(수수료 없음)
: 세무계산서, 납부계좌확인서, 수수료납부 및 접수 확인서, 검사일정안내문, 검사결과통보서(사본) 등

“ 쉽고, 편하고, 빠른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 만료안내 SMS 서비스 신청 안내 >

- ☑ 서비스개요
승강기 검사주기가 도래되면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이전에 승강기검사를 신청해야 하나 신청 시기 등을 놓쳐 검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검사주기가 다가오면 신청인에게 미리 휴대폰 문자로 검사신청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 신청방법
승강기민원24 접속 → 만료안내 SMS 서비스 신청 → 건물조회 → 본인인증(휴대폰 번호)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

[고객안내번호 : 4013-1812-0394-2]

1. 건물정보

건 물 명	뚝도정수센터
건 물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성수동1가)
안전관리자	서 * 호 (교육유효만료일자 2021.02.07 일까지)

2. 고객전용납부계좌 (납부금액 : 241,120원)

국 민 은 행	67659011198569	기 업 은 행	08201341597095
농 협 은 행	79016638199133	신 한 은 행	56209190221702
우 리 은 행	27378103018852	우 체 국	81081180117462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발행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가능)

3.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검사종류	정기검사	검사대수	2대	총수수료	241,120원					
순번	검사주기 도래일	호기 (설치장소)	승강기 고유번호	승강기형식	승강기종류	운행층수/ 주행길이(m)	검사수수료 (*휴일야간)	번호판 수수료	분동 수수료	부가세
1	2018.12.15	1(1-1)	0085-552	로프식	장애인용	3	109,600	0	0	10,960
2	2018.12.15	2(1-2)	0085-551	로프식	장애/전망용	3	109,600	0	0	10,960
합계							219,200	0	0	21,920
총합계							241,120			

※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승강기민원24"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행정민원 →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

※ 완성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분동(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 수수료(73,000원, VAT별도)는 별도 산정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분동을 준비하는 경우 분동수수료는 제외됩니다.
-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17조와 관련하여 정격하중이 5,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는 수검자(승강기 관리주체 등)가 분동을 직접 준비하여 하중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분동수수료가 제외됩니다.

문의 : 고객지원센터 1566-1277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건물 내 승강기 전체 보유현황

순번	검사주기도래일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승강기형식	승강기종류	운행층수/ 주행길이(m)	적재하중(kg)
1	2018.12.15	1(1-1)	0085-552	로프식	장애인용	3	1,000
2	2018.12.15	2(1-2)	0085-551	로프식	장애/전망용	3	1,600

- 이 하 여 백 -

